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구합34068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공부상 원고의 아들 C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을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매각대금 역시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3

2)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3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만약 매도인이 원고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따라서 위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3. 2.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16.이 되기 전에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05. 1.경 원고의 아들 C 명의로 E,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C은 2005. 3. 25.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7. 20. D에게 다시 매도되었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2. 7.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C은 매도인인 E,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3

께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C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